

한옥마을 특성 반영을 위한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본 자료는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한옥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주요 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참고용 자료임

2017. 12.

국 토 교 통 부

건축문화경관과

차 례

1.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안내서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기본 방향	1
3) 적용 범위	2
4) 내용 구성	2

2.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안내서의 주요 내용

1) 입지	3
2) 토지이용계획	8
3) 도로와 주차시설	9
4)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92
5) 가로경관	3

부 록

1.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특례
2. 신규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 현황

1.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안내서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옥지원 정책에 의해 한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옥 보급의 효과가 큰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계획되고 있다.
- 도시지역의 신규 한옥마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됨으로써 전통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의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절차에 따라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에 사업 종료 이후 한옥마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5호)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과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대지 및 건축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한옥마을 조성 시 참고할 지침으로 충분하지 않다.
- 이 안내서는 전통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고유의 미를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계획 요소와 권장사항,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전국에 신규로 조성되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통 한옥마을의 특성을 담아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기본방향

- 지구단위계획이 한옥마을 조성의 '규제' 수단이 아닌 '진흥 및 확산'을 목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 한옥의 특성과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계승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요소와 내용을 제시하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한다.

- 관련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 건축사, 시공사, 건축주와 그 외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전통마을 관련 예시와 신규 조성 한옥마을 사례를 제시한다.

3) 적용 범위

- 이 안내서는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단독주택용지(필지형, 블록형) 그리고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50호 이상¹⁾ 신규로 조성되는 한옥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 규모²⁾의 한옥마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한옥마을로 개발할 경우 한옥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한옥마을의 유지관리를 위해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4) 내용 구성

- 전통마을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요소는 ① 입지 ② 토지이용계획 ③ 교통 ④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⑤ 경관으로 구성한다. 신규 한옥마을 조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소개를 위해 ⑥ 행위제한의 완화와 특례를 추가한다.
-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5호)를 따르며, 한옥 건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77호)과 「한옥건축권장가이드라인」(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한옥 건축 기준 안내서』, 2015, 부록)을 참고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한옥의 경우 5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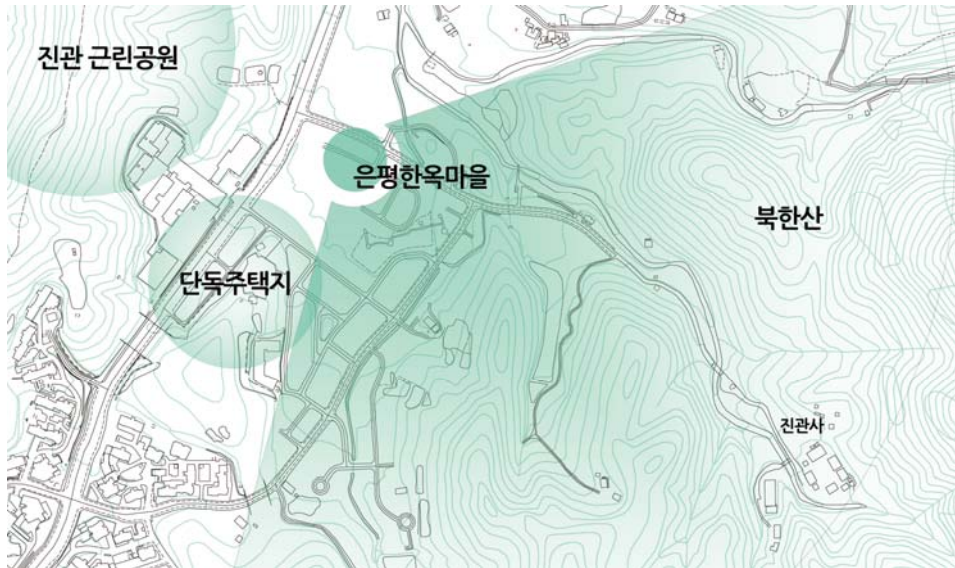
2)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 면적1만㎡ 미만(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또는 50호 미만의 소규모 한옥조성사업

2.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1) 입지

풍수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유리한 곳을 입지 대상으로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 뿐 아니라 향후 개발 수요와 그 배경에 대한 예측과 고려가 필요하다.

- 전통마을은 풍수지리의 이상적 입지를 중시한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인 배산임수의 입지를 주로 취한다. 따라서 마을이 들어설 터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최근 새로 조성된 한옥마을은 전통적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산(또는 구릉지)과 강을 끼고 들어서는 사례가 많다.
- 과거와 달리 현대는 생활의 편의성과 타 도시와의 연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옥내 거주할 가족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유자시설, 학교, 병원, 쇼핑 등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을 고려한다.
- 현대는 개발수요가 높다. 특히 도시지역에 한옥마을이 조성될 경우, 아파트나 고층건물로부터 한옥마을의 일조권, 조망권, 채광,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고층 건물과 저층 한옥마을이 이루는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
- 따라서 한옥마을의 입지 선정 시 주변 여건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향후 개발수요에 대한 예측과 관리도 필요하다.
 - 서울시는 '한옥보전구역'제도를 통해 한옥 뿐 아니라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주변지역까지 포괄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규제한다.
 - 은평 한옥마을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나, 동으로는 북한산을 조망하고 서로는 진관 근린공원이 위치한다. 남으로는 단독주택지와 인접하여 주변의 개발 수요로부터 자유롭다.



[사례] 은평 한옥마을과 주변 여건

마당을 갖는 한옥의 특성을 반영한 배치를 위하여 원지형의 녹지축과 경사도를 가급적 보전한다.

- 신규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는 부지조성단계에서 해당 부지를 평탄화 함으로써 원형지가 훼손되고, 기존 경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개별 한옥이 자연 지형에 따라 유기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조망과 일조가 확보되었던 한옥마을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연지형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참조)
- 사업구역 내 자연지형의 경사도, 식생, 수목, 습지 등의 환경자원 기초 조사를 수행하고, 공원, 연못, 수로, 우수 저류시설 등의 연계 활용 계획 수립을 권장한다.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한옥마을은 신도시 문수지맥 녹지축과 송평천·호민지 수계축을 연결하는 녹지를 계획하였다. 또한 연못, 개방형 수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



[사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한옥마을 녹지 및 수로계획(안)
출처: 경상북도개발공사(2017), "한옥마을에서 한옥 짓기" 자료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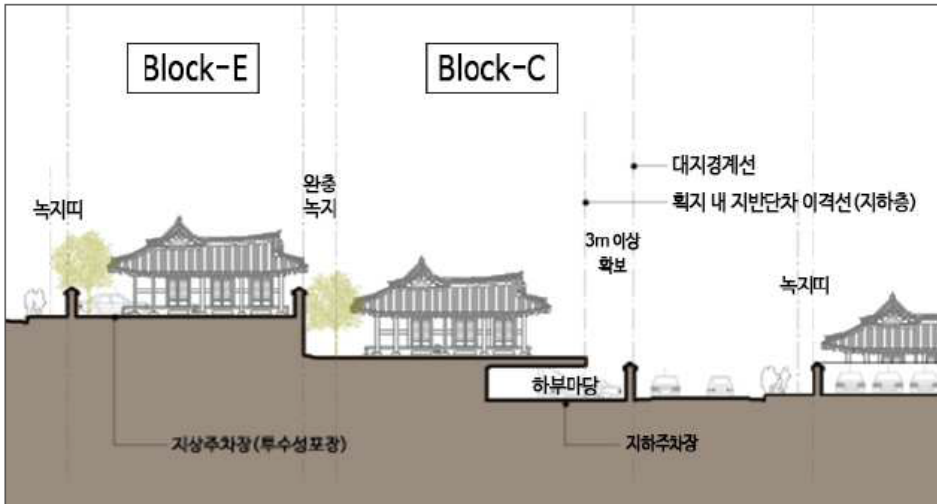
- 한옥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필지의 성절토를 최소화하고, 경사도를 이용한 한옥의 배치 및 설계를 권장한다.
- 경사지형은 주차장 등 단차를 이용한 시설을 배치한다. 급경사로 인해 옹벽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하며, 전통적 문양의 옹벽이나 자연친화형 옹벽 설치를 권장한다.



[사례] 서울 도봉구 옹벽녹화(창원초등학교 맞은편)
출처: 서울시 도봉구청 도봉e뉴스레터(2011), "도봉구 서울창원초등학교 맞은편 벽면녹화 조성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우수 사례로 선정", (2011. 8. 11.)



[사례] 전주 한옥마을 옹벽



[예시] 대지의 단차를 이용한 주택의 하부마당(주차장) 설치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7), "1-1, 1-3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06-특화계획(2017년0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p.262

한옥마을의 영역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에 마을숲이나 전통적 조경 식재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물리적·시각적 위요성을 갖도록 한다.

- 전통마을은 산, 강 등의 자연 지형에 따라 마을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강한 영역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접근성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강조되면서 영역성이 사라지고 있다.
- 한옥마을 경계에 마을숲을 조성하거나, 전통적 조경 식재를 통해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마을 외부로부터 위요성³⁾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한옥마을의 경우 마을 경계부에 원형지를 보존하여 마을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 은평 한옥마을은 북한산이 자연 경계의 기능을 하며, 간선도로인 연서로와 대상지 경계에 녹지띠를 두어 마을 외부로부터 위요성을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3) 위요(圍繞)는 '어떤 지역이나 현상을 둘러쌈'(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이라는 뜻이다. 공간이 외부와 물리적·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사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단계 한옥마을 배치도(안). 간선도로에 면하는 경계부에 원형지를 살려 마을숲(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전통적 경관을 창출한다.

출처: 경상북도개발공사(2017), "한옥마을에서 한옥 짓기", 국토교통부·경상북도개발공사, 행사 자료집 발췌



[사례] 은평 한옥마을. 간선도로인 연서로와 대상지 경계에 녹지띠를 설치하였다.

2) 토지이용계획

주거용도 이외의 용도는 한옥마을에 적합하도록 전통문화와 관련한 용도를 유도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 외관은 한옥마을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한옥마을의 내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별표2]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하되,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 우선 입지되도록 고려한다.
-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이외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차목의 한옥체험업을 위한 한옥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옥 체험업

법령	내용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6호차목 (2009. 10. 7. 신설)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그 외에 한옥마을 조성 목적에 따라 공방, 한옥체험시설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용도를 병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관이 한옥마을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 이 외에 한옥마을의 정서를 저해하지 않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중 사진관과 일반업무시설(주민공동체사업, 또는 마을기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는 별도로 이행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주차장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기타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참조)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기준 및 면적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 한옥마을 건축물 허용용도 예시

구분	건축법상 용도 분류	적용기준	비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1가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2~3가구) 한옥체험시설, 공방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복지시설 공방과 한옥체험시설 등은 주거용도와 병행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소매점, 약국, 편의점 등	바닥면적 1,000㎡미만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바닥면적 300㎡미만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 1,0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어린이 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의 ‘주민공동시설’
		출판사 등 문화관련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 30㎡ 미만
		사진관, 표구점	-
		제조업소(목공소), 세탁소	바닥면적 500㎡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일반사무소	바닥면적 500㎡미만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한함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문화, 입시, 한옥관련)	-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전통체험시설, 청소년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한옥의 특성인 마당을 적정규모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은 건폐율 50% 이하를 권장하고,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100% 이하를 권장한다.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규정한다.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통해 적정한 한옥마을의 밀도를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 도시지역에서 한옥의 특성인 마당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지역은 건 폐율 50% 이하를 권장하고,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100% 이하를 권장한다. 비도시지역은 해당 구역의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 세종 한옥마을은 단독주택 용적률을 50%로 제한하여 단층 한옥으로 제한 하고, 은평 한옥마을은 100% 이하로 2층 한옥까지 허용한다.

[사례] 신규 조성된 한옥마을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대상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세종 한옥마을	1종전용 주거지역	50%이하	(단독) 50% (근린) 80%
은평 한옥마을	1종전용 주거지역	50%이하	100%이하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한옥마을		50%이하	100%이하



[예시] 전통 마당(순천 낙안읍성)
안마당에는 큰나무를 심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농산물의 건조, 농사일, 행사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예시] 현대 마당(전주 한옥마을)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점차 조경의 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 도시지역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 지역 특성, 대지내 공지 제공(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3), 자연지반 보존, 한옥마을 내 민간운영 커뮤니티시설의 외부 개방 등에 따라 건축물의 밀도를 완화할 수 있다.
-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인 70% 이하로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경관 특성과 다층 한옥의 형태를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층 이상의 상층부는 인접 한옥의 조망권과 채광을 저해하지 않는 규모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2층 한옥 건축 시 상층부를 하층부와 동일한 규모로 계획하여 인접 건축물의 조망권과 채광을 침해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층 이상의 상층부를 인접 한옥의 조망권을 저해하지 않는 규모에서 1층의 전용면적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고, 다양한 평면 구성을 유도한다.



[사례] 은평 한옥마을 2층 한옥



[사례] 은평 한옥마을 필로티를 활용한 한옥

한옥의 최대 높이는 지형 이외에 지붕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한옥에서의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최대 높이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나(「건축법」 제60조 제2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 높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 한옥은 기단, 평면의 구성, 지붕 형태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구릉지, 평지 등의 지형을 감안하여 지붕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롭게 형성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설정한다. 필요한 경우 인접 한옥의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 지하층과 다락 등 설치를 유도하여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층수 제한보다는 최대 높이 제한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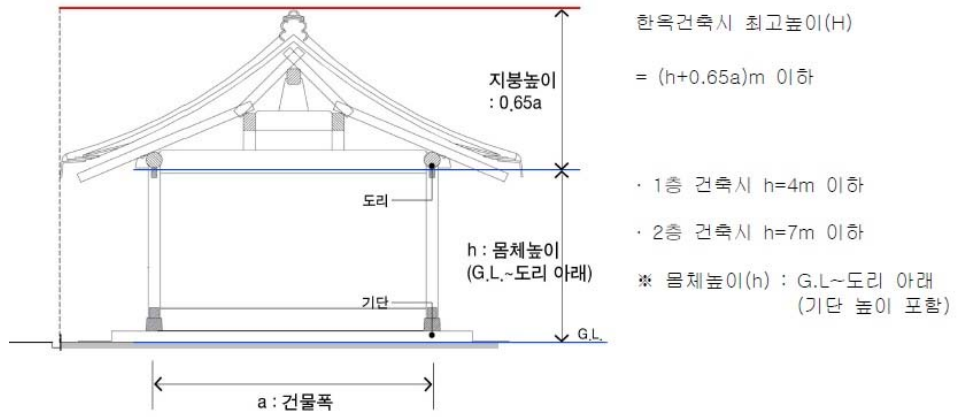
[예시] 2층 한옥, 화수무
1693년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건물로 전면에 一자형 2층 누각을 세우고 뒤로 ㄷ자형 단층건물로 구성



[예시] 2층 한옥, 김무규 선생 한옥
1922년 구례 산성리에 지어진 한옥으로 경사지를 활용해 2층으로 구성(현재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이축)

[사례] 건축물 최대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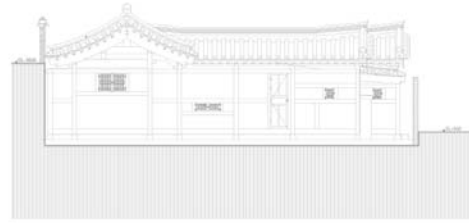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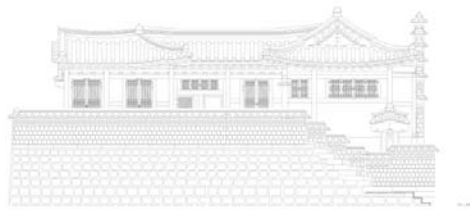
구분	지자체 조례 (*서울시 사례)	세종 한옥마을	은평 한옥마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한옥마을
단독주택	2층 이하 또는 12m이하 (지붕경사31일 경우)	1층	최고층수 2층 이하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층 건축 시: (4+0.65a)m 이하 2층 건축 시: (7+0.65a)m 이하 (* 그림 참조)	2층 이하 *최고 높이 해당 없음
근린생활시설		2층		



[예시] 은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높이지침 적용기준
 출처: 서울시(2014), "3단계 은평뉴타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서울시,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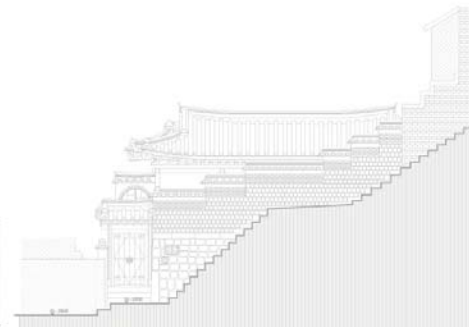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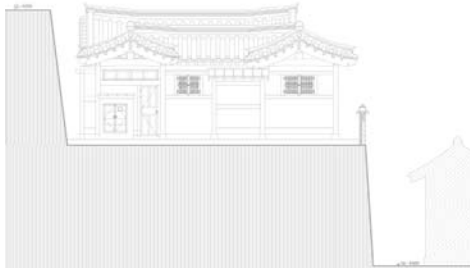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예시] 경사지형을 고려하여 지하공간과 다락을 설치한 한옥
 출처: 국토교통부(2013), "2013대한민국한옥공모전", 국토교통부, p.15 (설계: 북촌HRC, #200)

전통 한옥마을의 유기적 배치가 반영되도록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형태를 다양하게 구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전통마을의 필지는 자연지형에 따라 정형화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는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선형·격자형으로 주로 구획한다.
- 신규 한옥마을 조성 시 사업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획일적인 가구 및 획지 계획을 지양하고 유기적이고 비정형적인 전통한옥마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시] 아산 외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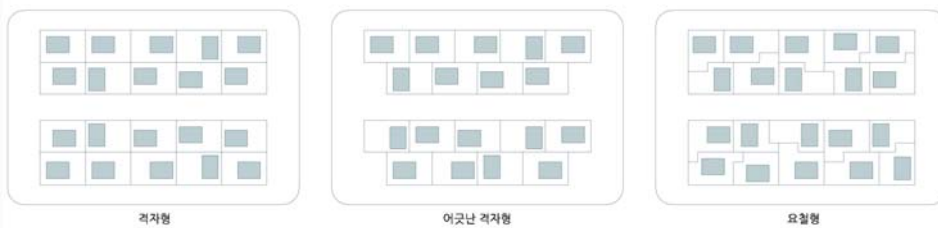
출처: 한필원(2005),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2", 북로드, p.210



[예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한옥마을 D6-1~16

출처: 경상북도개발공사(2016), "경북도청이전신도시 한옥주택용지 공급안내", 경상북도개발공사, pp.8~9

- 격자형과 함께 요철형·부정형 필지를 적절히 융합하여 필지 배치에 변화감을 준다. 격자형으로 배치할 때에는 개별 필지를 어긋나게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가구 및 획지 계획 시 한옥의 좌향과 도로체계에 따른 대문, 창·의 위치, 보행 동선체계를 고려하여 3차원의 한옥 배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민간에게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예시] 필지의 형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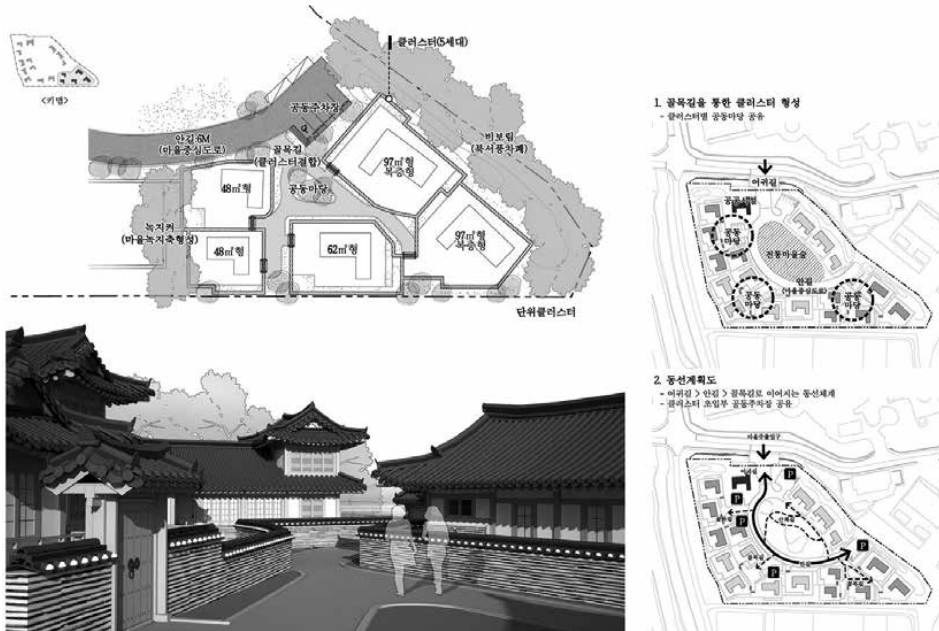
[사례] 오창 미래지 필지 배치도(부정형 필지 배치)
(설계: 우성산업개발)



[사례] 장성 황동행복마을 내 2개 블록 필지 재구획 계획(안)
(설계: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한옥마을 내 일부 필지를 주차장과 마당을 공유하는 클러스터형으로 조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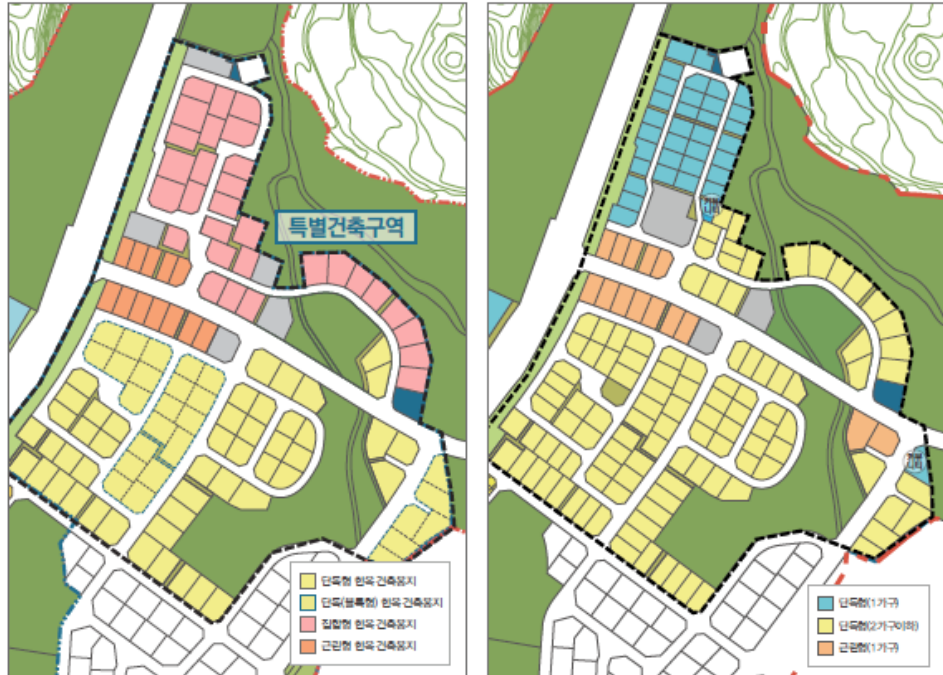
- 전통 한옥마을의 공동체적 특성을 획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 기법으로서 이웃 간 공유외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획지 계획을 권장한다.
 - 5~8호의 한옥이 도로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클러스터형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세종 한옥마을은 클러스터형, 개별주호형, 이층한옥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총 50개 필지 중 27개 필지를 클러스터형으로 공급하였다.
- 클러스터형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표준평면을 적용하게 되면, 단조로운 한옥 배치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해 유의한다.



[사례] 강릉 한옥마을 단위 클러스터 배치와 조감도 (설계: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한옥마을의 경관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필지의 규모를 140㎡이상 660㎡미만 내에서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가구간 상호 연계성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위해 비슷한 규모로 구획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 한옥마을의 경관의 다양성 측면과 배치된다.
 - 세종 한옥마을의 1개 필지 규모는 282.5~328.5㎡로 전체 필지의 규모가 비슷하며, 은평 한옥마을은 200~410㎡ 내외의 수준이다.
- 한옥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특성을 충족하고, 풍부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획지는 다양한 규모로 구획한다.
 - 획지 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인 140㎡ 이상 660㎡ 미만의 범위 내에서 구획한다.



[사례] 은평 한옥마을 (좌)2013. 3. 변경 전 필지 계획, (우) 2014.6. 변경 후 필지 계획

- 한옥마을의 입주자 특성 및 가족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지 면적에 따라 집합형 한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커뮤니티의 고유한 영역성과 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독형 한옥(1주택 1가구)과 집합형 한옥(1주택 2~5가구 미만)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 세종 한옥마을은 1주택당 1가구로 제한하고 있으며, 은평 한옥마을은 단독형 한옥(1가구)과 집합형 한옥(2가구)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⁴⁾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 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 합병은 단독주택용지의 필지 규모인 140㎡ 이상 66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2개의 필지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한다.

4) 초기 배치 계획에는 95개의 필지로 구성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필지당 면적을 조정하여 115개의 필지로 재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집합형 한옥의 가구수도 최대 3가구에서 2가구로 감소하였다.



형태		규모(m ²)	필지수
단독형	일반형	210~410	48
	블럭형	1,430~2,230	4
근린형		190~240	12
집합형	소형(3세대)	230~390	19
	중형(2세대)	280~440	11
공익시설		361	1
계			95

[사례] 은평 한옥마을 초기 배치 계획(안). 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단독형, 왼쪽에 집합형으로 구분하여 배치



[예시] 서울시, 마당집합형 한옥 조감도

3) 도로와 주차시설

한옥마을 내 도로 구성에서 전통마을의 도로체계(어귀길, 안길, 셋길)의 속성을 현대 도로체계에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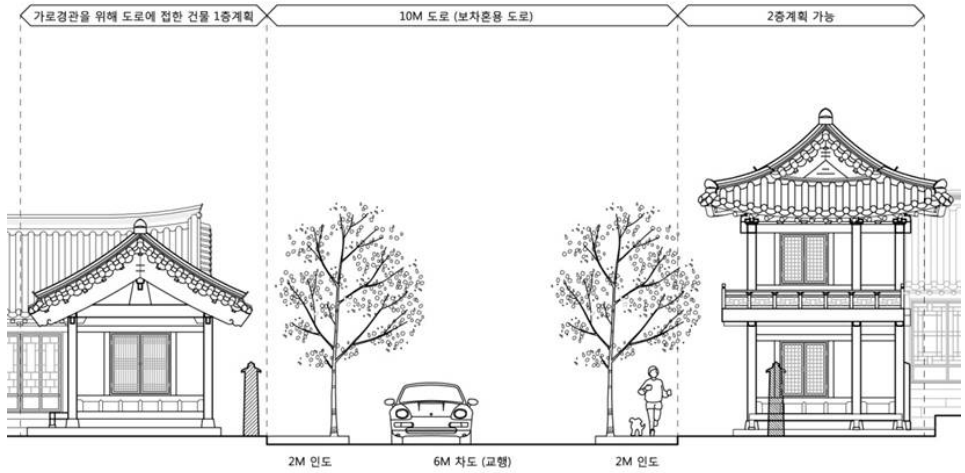
- 전통 한옥마을에서는 마을 내 이동이 보행으로 가능하였으나, 현대에는 자동차가 주요 이동수단이 되고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토지이용 계획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전통 한옥마을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체계에 전통적 길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통마을의 길은 마을 입구의 어귀길에서 시작하여 마을의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안길, 그리고 안길로부터 집까지 이어지는 셋길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을 내 도로는 전통마을의 도로 체계에 따라 보조간선도로(어귀길)-집산도로(안길)-국지도로(셋길)의 체계로 구성한다. 부지의 면적 및 여건에 따라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는 동일한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사례] 신규 한옥마을 단지 내 도로 계획

도로체계	세종 한옥마을 가로 폭	은평 한옥마을 가로폭	한옥마을 가로폭(안)	비고
보조간선도로	폭 12m	폭 12m	폭 12~15m	보차분리
집산도로	폭 10m	폭 12m	폭 10~12m	보차분리
국지도로	폭 6m	폭 6m	폭 6m	보차혼용 (보행우선)
보행자전용도로	폭 4m	폭 4m	폭 4m	보행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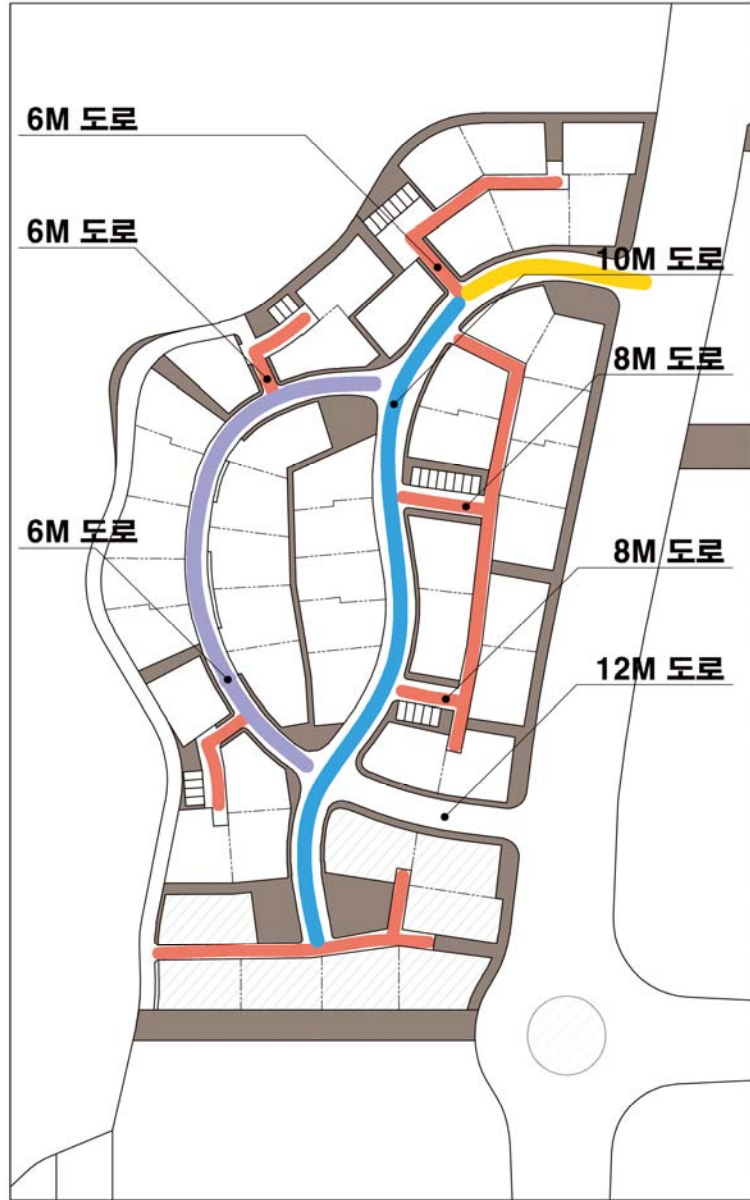
- 마을의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인 보조간선도로는 12~15m(중로 2~3류)의 폭으로 계획할 수 있다. 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이용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획한다.

- 집산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10m의 폭 이상(소로 1류~중로 3류)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차분리로 설계하며, 마을 내 공동시설과 연계되도록 한다.



[예시] 한옥마을 내 10m 도로
출처: 경상북도개발공사(2017),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안)”, 내부자료

- 개별 주호로 연결되는 국지도로는 최소 6m 폭의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지도로는 한옥마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휴먼스케일로 계획한다.
 - 가로수, 벤치, 식재, 공공 미술품 등을 설치하여 재미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차량의 속도경감을 위해 도로 표면을 화강암과 같은 거친 질감의 요철을 둘 수 있다.



[예시] 세종 한옥마을 도로 체계 및 가로 폭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7),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1-1생활권, 2017년0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구성

보행자 전용도로를 활용하여 전통 한옥마을의 골목길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여 골목길을 조성한다.

- 전체 당해 구역에 대해서 전통 한옥마을의 골목길 또는 마을 둘레길과 같이 녹지와 연계된 보행 동선 또는 보행 네트워크를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골목길로서 주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을 연계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녹지 내 보행로를 2m 폭으로 설치하여 담장과 어우러지는 한옥마을 고유의 정취를 살리는 것을 권장한다.
- 골목길 조성이 어려울 경우, 국지도로(샛길)의 바닥 패턴에 변화를 주어 골목길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 한옥마을 내 보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당 부지 외곽은 루프형 도로로 순환시키고, 부지 내부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구성할 수 있다.



창평 삼지내마을. 자연스러운 곡선이 특징인 전통마을의 골목길



나주 도래마을. 폭이 좁고 변화감을 주는 골목길 조성



진주 한옥마을. 식재를 통하여 도로를 분할하여 골목길 규모의 보행로를 조성

출처: 네이버지도(2015), "로드뷰", map.naver.com



제주 오시리가름 협동조합주택. 도로 포장 패턴을 통해 골목길 분위기를 조성

출처: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COOPERATIVE HOUSING IN JEJU", emaa.co.kr

도로의 굴곡, 자연재료의 가로 포장, 전통 화목(花木)의 식재, 전통적 디자인의 가로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한옥마을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높인다.

- 한옥마을 내에서는 전통 한옥마을처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가로계획을 한다.
- 도로의 폭 및 배치간격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수하나,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통정온화 기법으로서 마을 내 도로는 감속을 유도하는 굴곡형 도로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에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없는 턱낮춤을 설치하고, 험프형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가로의 포장은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자료를 사용하며, 식재는 가로수에 적합한 전통 화목(花木) 또는 지역의 자생수종을 고려한다. 가로 시설물은 전통적 디자인이나 전통 문양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시] 덕수궁 돌담길. 보행자 중심의 보차공존도로
출처: 이혜선, "덕수궁 돌담길 시립미술관", 건축도시정책정보 센터 국내동향, www.aurum.re.kr



[예시] 진주역 앞 험프형 횡단보도. 보도의 높이와 포장패턴을 유지시킴으로써 통과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높임
출처: 네이버지도(2016), "로드뷰", map.naver.com



[사례] 은평 한옥마을 내 전통문양을 활용한 보도블록



[사례] 은평 한옥마을 내 굽이진 집산도로

한옥마을의 경관과 조화롭게 배치되고, 주차장 부족, 불법 가로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를 설계한다.

- 주차장은 보행이 주요 이동수단이던 전통 한옥마을에 없었던 공간이나,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현대 주거단지에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되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옥마을 내 주차장 계획은 전통 한옥마을의 가로 경관과 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모와 위치에 대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 특히, 마을 내 주차장 부족과 방문객 차량 증가는 가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의 주요 원인이다. 불법 가로주차는 보행의 안전성을 위해하고, 마을 경관을 해친다. 이에 주차장 설치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과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는 주택용지에 대해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세대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50~170%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한옥체험업 등 비주거용 주택 및 시설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 한옥마을 주차대수 산정 기준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한옥마을 주차대수(권장)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1대~4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한옥체험업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 200㎡당 1대 이상 (※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에 따라 추가 확보)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이상 (※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에 따라 추가 확보)

- 근린시설 등으로 인해 가로에서의 조업이나 주정차가 예상되는 집산도로의 경우 가로 주차를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마을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로수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가로주차를 시각적으로 차폐하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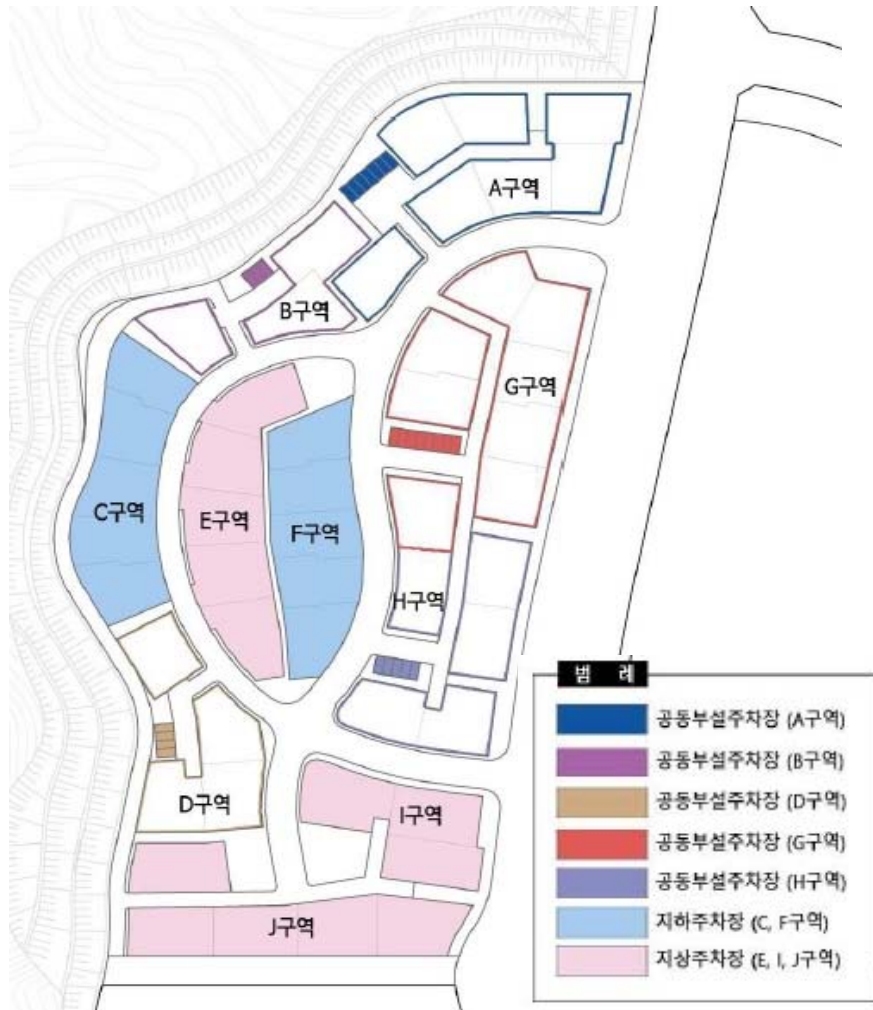
[예시]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주택가 가로에 주차장과 녹지를 조성하도록 계획적으로 유도
출처: Charles River Watershed Association(2008), "Green Streets Guide for Allston Brighton", Charles River Watershed Association, pp.33~38, 재구성

주민들의 공동이용공간의 확보를 위해 필지 면적에 따라 여러 채의 한옥이 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부설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공동부설주차장은 필요시 공유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 및 필지 면적에 따라 5~8호의 주택이 공유하는 공동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웃간 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공유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공동부설주차장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개별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하 또는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거나, 담장을 이용하여 가급적 보

행자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공용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의 규모와 배치, 한옥 체험업 활용 여부에 따라 규모를 결정한다. 마을 입구 또는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하여 마을 주민과 방문객 차량 동선을 분리시켜 혼잡을 피하고, 방문객 차량의 마을 내부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용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지형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설치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사례] 세종 한옥마을 주차장 계획. 클러스터형 주택용지(A구역, B구역, D구역, G구역, H구역)는 공동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간의 교류를 높이고자 하였고, 근린생활시설용지(I구역, J구역)는 필지 내 지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방문객과 거주민의 주차 동선을 분리시켰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7), "1-1, 1-3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06-특화계획(2017년0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263

주차장은 시각적 차폐를 위해 전통담장을 설치하거나 전통 수목을 식재한다.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 석재 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구가 보행가로를 단절하는 경우 단차를 없애고, 보행가로 패턴을 연장해 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주차장 바닥은 환경과 투수성이 양호한 잔디블록이나 석재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불투수성 포장 재료 사용 시에도 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투수 면적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주차장 잔디블록(청계산 공영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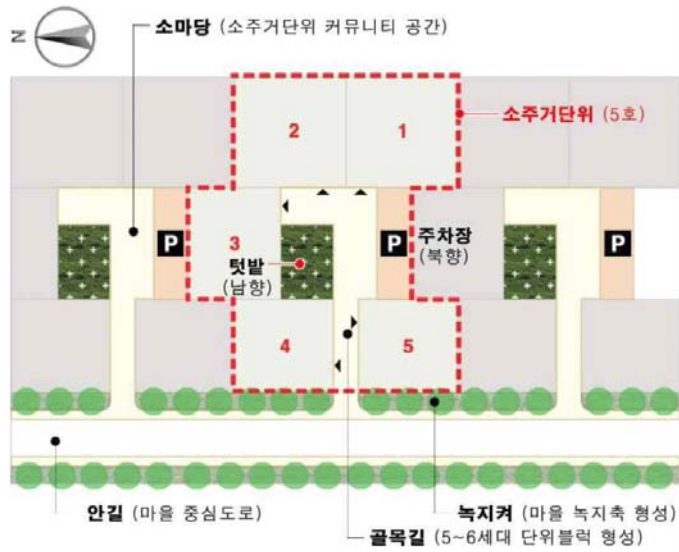


[사례] 투수성을 높인 함평 주포한옥마을 주차장

4)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전통적 경관을 한옥마을에 도입하기 위해 녹지, 공원, 광장 이외에 전통마을에서 공공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마을마당, 공동텃밭과 연못, 수로 등의 친수공간을 설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전통 한옥마을은 정자, 서낭당, 연못, 우물 등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을 곳곳에 위치하였고, 개인 주택에도 마당과 사랑채 등의 반공적 공간들이 있었다. 특히, 마을 마당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농사일을 돕고, 세시풍속의 축제를 함께 치루는 장으로 사용하였다.
- 현대 주택단지에서도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이 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현재 공공시설물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50호수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50호 미만의 한옥마을 계획 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 한옥마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규 한옥마을에 정자, 연못, 수로, 빨래터, 텃밭, 마을 어귀길 등의 전통적 공공공간을 재해석하여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동마당 또는 여러 채의 한옥이 공유하는 소마당과 텃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한옥 입주 희망자들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텃밭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신규 한옥마을에서 텃밭을 계획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 친수공간으로서 연못과 수로를 한옥마을에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 연못과 수로는 공공공간의 역할, 미기후의 조절, 수질정화기능, 교통오염물질 및 먼지 제어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다.
 - 연못은 저지대에 조성하여 저류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예시] 의정부 민락지구 한옥마을 당선작. 클러스터형 주택의 배치. 주택 가운데 마당과 텃밭,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 급성종합건축사사무소)



[사례] 일본 기후현 구조하치만 수로
출처: Gujo Hachiman Tourism Association(2017), "郡上八幡が国の重要伝統的建造物
保存地区に選定", <http://www.gujohachiman.com/kanko>



[사례] 전주 한옥마을에 조성한 인공수로

한옥마을의 랜드마크로 기능하도록 공공시설은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설의 용도는 마을과 인근 지역의 수요에 따라 노유자시설과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도서관 등) 등을 개방형·가변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한옥마을의 상징성을 갖도록 공공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비한옥으로 건축할 때에는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계한다.

주요구조부가 목조인 한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화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등에 의거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한옥의 주요부재가 목조인 것을 감안하여 방화설비 설치가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방화설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준수한다.
 -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층이 있는 한옥의 경우, 건축허가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처마 및 담장 등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권장하고, 해당 지역별 마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단독주택도 범죄예방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한옥마을의 경관, 공공공간 및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조직 및 주민협정 체결을 지원한다.

- 주민들이 한옥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마을을 관리해가는 데 필요한 사항들은 주민협정의 형태로 구체화하도록 지원한다.
-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결정할 수 없거나, 실효성이 분명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협정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민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운영 사항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주민협정으로 정할 수 있다.
- 협정서의 내용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한옥 및 근린 환경을 직접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나 약속을 담는다.
 - 예로, 마을 목공소의 운영, 마을 텃밭, 마을숲, 연못 등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 협정서의 작성 및 운영은 주민협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민협의회 구성과 협정서 작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 총칙: 협정의 목적 및 명칭, 구역, 참여자 등
 - 운영 주체: 조직의 구성 및 임원의 선출
 - 운영 시기: 모임의 개최 시기 및 의견 개진에 관한 사항
 - 협정서의 내용:
 - 공동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방안, 건축물의 허용 용도 적용 방안, 공공공간의 이용 및 관리 방안, 쓰레기 처리 및 내집 앞 정비, 공동체 협정 유지를 위한 재원의 마련 방안 등
- 마을의 공공시설물은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마을 외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 이 경우 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 요금을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운영 요금과 관리는 기초자치체 등과의 협약 등을 별도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계획서’⁵⁾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협약서’⁶⁾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역개방시설은 피트니스센터, 연회장, 북 카페, 방과 후 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보육 시설, 경로당, 지하공용주차장 등이다.

5) 지역개방 적용대상 시설물 및 개방프로그램, 운영방안, 지역주민 공동 이용효과 등이 포함

6)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구청의 협약사항 등이 포함

[사례] 복촌 지구단위계획 주민협정으로 정하는 사항

구분	내용	비고
<p>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점포의 폭원 - 설비 등의 처리 - 지붕, 담장 등의 디자인 - 건축물의 재료, 색채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에 관한 사항 - 간판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한 사항 	
<p>환경개선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 화단 및 화분 설치 등 •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 조업차량 진입 가능시간 및 불법주차의 관리 • 야간조명의 운영 • 위험물의 처리 • 기타, 환경개선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p>※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변경 가능</p> <p>※ 야간조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p>
<p>특정가로별 경관관리에 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가로별 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특정가로별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 기타, 특정가로에 대하여 경관관리가 필요한 사항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시 주민협정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승계에 대한 사항 •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및 주민협정 위반시 조치사항 •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복촌가꾸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가로 경관

지붕곡선이 경관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옥의 평면 구성과 배치를 통해 다양한 지붕곡선을 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밀집한 한옥의 지붕선과 담장이 만들어내는 골목길의 가로경관은 전통 한옥마을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이며, 가로에서 보이는 한옥의 지붕과 처마, 그리고 가로 면에 설치되는 담장과 대문은 가로경관의 차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 전통 한옥마을에서 개별 한옥의 배치는 안산을 바라보는 경관축을 중시하여 배치하였으며,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향을 달리하였다. 오늘날에도 조망권은 주택을 배치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례] 보은 선병국 가옥. 건축 공간의 쓰임과 주변 맥락에 따라 배치축을 다양하게 설정

출처: 문화재청(2006), "韓國의 전통가옥 중요민속자료(제134호) 기록화보고서", 문화재청, pp.7~8

- 한옥의 배치 및 향은 필지와 도로의 형태, 경관축 및 조망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한옥의 평면 구성과 배치를 통해 다양한 지붕곡선이 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근린생활시설 한옥 건축물은 전면도로에 벽면 및 출입구를 접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개별한옥은 골목길 등의 공유외부공지에 창호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지하층 일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되거나 2층으로 건축하는 경우, 담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 이하에서 적절한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한옥 건축 기준 제8조)



[예시] 복촌 한옥마을 담장의 높이기준
출처: 이강만이세진(2015), “한옥정책 브리프 40호,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p.11

-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은 높이 2미터가 넘는 담장 축조 시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담장 높이에 대한 신고 규정, 가로에서의 처마선 확보, 골목길의 자연적 감시 및 보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담장은 1.8m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위치는 대지경계선을 따라 모두 설치하거나, 또는 도로에 면한 부분만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담장의 연속성을 위하여, 대문 설치 불허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 담장 쌓기의 방식은 지역별 정체성을 고려할 경우, 통일된 형식의 재료와 쌓기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 대문은 한옥담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와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솟을대문과 같이 좌우행랑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사례] 순천 낙안읍성 토석담



[사례] 전주 한옥마을 벽돌담



[사례] 은평 한옥마을



[사례] 담장 및 대문 관련 신규 한옥마을(은평, 세종,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구분	은평 한옥마을	세종 한옥마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한옥마을
담장	-가로에 면한 담장은 1.8m 이하 권장 -장대석, 사괴석, 점토벽돌, 외편, 자연석, 회벽 등 전통적 재료 사용, 전통무늬와 장식 구현 -담장상부 기와사용 권장	-가로에 면한 담장 해당 한옥 처마 선 중 가장 낮은 부분 높이 이하, 1.8m 이하 -마당과 정원 등 대지 내-외부공간 및 가로에서 담장의 연속성 확보 -꽃담, 화문장, 토담 등 전통담장 -담장상부 기와사용 -대지경계선을 따른 담장설치 -대문 설치 불허 구간 대문 및 기타 부출입구 설치불가	-한국전통디자인 포함하는 담장 조성 -가로에 면한 담장은 1.2m 이하 권장
대문		-목재 문틀과 기와지붕 사용, 한옥 담장과 조화 유지하며, 높이는 3.5m 이하	

마을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의 진입부인 어귀길을 조성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전통마을은 마을 입구에 어귀길을 조성하여 마을의 장소성을 표현하고, 액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마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경관성 뿐 아니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에서도 마을의 입구에 상징적인 어귀길 공간 조성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반영한다.
- 마을의 주출입구는 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진입광장이나 정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사례] 공주 소라실 마을 장승
출처: 문화재청(2014),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여행길 충청권",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22134&bbsId=BBSMSTR_1006&mn=



[사례] 외암마을 안내판

마을의 공공공간과 녹지의 수목은 전통 수종을 도입하여 담장과 어우러진 전통 경관을 조성한다.

- 전통적으로 한옥의 내부에서는 마당을 비워두어 집안 행사나 농사일을 하는 대신, 담장을 낮게 하고 대청과 창호의 열린 구조를 통해 담장 밖 외부의 풍경을 주택의 내부로 들여오는 차경을 경관 요소로 활용하였다.
- 마을의 공공공간과 녹지에는 전통 수종이나 지역의 자생수종을 식재하여 전통 경관을 조성한다. 담장을 따라서는 저층식재와 수로 등을 배치하여 담장과 어우러진 경관을 만들고, 유지·관리한다.
- 담장의 높이가 낮거나 대지가 경사지에 위치하여 차폐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담장 높이보다 높은 수고의 나무를 식재하여 차폐를 보완할 수 있다.

[참고] 강희안의 「화목9품(品)」

구분	화목
1품	소나무(松), 대나무(竹), 연(蓮), 국화(菊)
2품	모란
3품	사계, 월계, 왜철쭉, 연산홍, 진송(進松), 석류, 벽오동
4품	작약, 서향화, 조송, 단풍, 수양, 동백
5품	치자, 해당화, 장미, 홍도(紅桃), 삼색도(三色桃), 진달래, 파초, 동자꽃, 금전화
6품	백일홍, 홍철쭉, 홍두견화, 두충
7품	이화(梨花), 향화(香花), 보장화, 정향, 목련
8품	촉규화(접시꽃), 산단화, 옥매(玉梅), 출장화
9품	옥잠화, 불등화(佛燈花), 초국화, 석죽화, 봉성화, 맨드라미, 무궁화

주: 강희안(姜希顔)이 1474년 저술한 원예서인 『양화소록(양화소록)』은 『진산세고(晉山世稿)』 제4권에 수록되어있다. 이 책에는 화목의 재배법과 이용법, 화목의 품격, 상징성이 설명되어 있다.



[예시] 산청 남사예담촌 담장길
출처: 한국관광공사, “구석구석여행지찾기”,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main_search.jsp?cid=128440



[사례] 공주한옥마을의 녹지 조성
출처: 충청남도 충남넷(2017), “여름휴가 공주한옥마을 어떨까요”,
http://www.chungnam.net:8100/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1097031&med_action=view&menu_cd=CNNMENU00014

한옥마을의 야간 경관을 위해 보안등을 설치하며, 전통적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한옥마을의 야간 경관을 위해 보안등 설치를 권장한다.
 - 보안등은 집산도로와 간선 도로변과 골목길 등에 방범,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보안 조명시설이다.

- 도로 또는 골목길 여건에 따라 45~10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기타 관련 규정은 지자체 조례를 준수한다.
- 보안등의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하며, 한옥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한다.
- 친환경적인 LED 광원 보안등, 태양광 보안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 전기요금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정 이후 주변 동식물의 성장을 위해 밝기 조절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사례] 롯데부여리조트 야간 조명
출처: 부여군청, “부여문화관광”, <http://tour.buyeo.go.kr>



[사례] 남산 한옥마을 야간 조명
출처: 서울시(2017), “서울사랑, 서울의 밤”,
http://love.seoul.go.kr/asp/articleView.asp?intSeq=4630&tr_code=snews



[예시] 전주 한옥마을 보안등



한옥의 지붕과 처마선을 가리지 않도록 옥외간판의 가로폭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한 칸의 크기보다 작게 한다.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 옥외간판은 디자인과 조명이 과할 경우 한옥마을의 경관과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규모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
- 간판은 처마선을 넘어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지붕과 처마선을 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간판의 가로 폭은 기둥과 기둥 사이 한 칸의 크기보다 작게 할 것을 권장한다.
- 간판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을 권장한다. 영어 또는 한자 등 기타 언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 병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보다 작게 배치한다.
-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며, 한옥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야간조명의 경우 원색은 불허하며, 간접 조명을 권장한다.

[사례] 옥외간판 관련 지침

구분	은평 한옥마을	세종 한옥마을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한옥주택용지
설치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계면적 가로에 면한 외벽면적 1/12 초과하지 않도록 함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간 이내에 설치 -간판이 지붕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돌출형 간판의 경우 처마선 넘지 않도록 함 -2층 설치 시 1개소 이내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형보다 입체형 간판 권장 -목조기둥으로 분절된 간 이내에 설치 -누계면적 가로에 면한 외벽면적 1/12 초과하지 않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 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 설치 권장 *지하층 점포이용 경우 지하층 출입구 상단 설치 허용
재료 및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표기 원칙, 부득이하게 영문표기 시 한글과 병용 -영문 글자크기는 한글의 30% 이하, 한글보다 강조되지 않도록 함 -과도한 야간조명 제한, 간접조명 등으로 광원 직접 노출 지양, 문자 부분에만 빛이 나오는 조명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청사 주변 단독주택용지)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표시 권장



[사례] 전주 한옥마을 한글 간판

부록 1.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련 특례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 「건축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구역·도시개발구역·공공주택지구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지구단위계획 중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 구역 등에 다음과 같은 특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는 「건축법」 제73조에 근거하며 적용의 배제 규정과 적용의 완화규정으로 구분된다.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별표 3](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참고]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근거조항	세부내용
적용배제	1.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대지 내 조경, 건축물의 견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	공동주택의 배치, 기준척도, 조정시설, 비상급수시설, 난방설비,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적용완화	1. 「건축법」 제49조~53조, 제62조 및 6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마감재료, 지하층, 설비기준, 승강기,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2.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 「건축법」 제72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친다.

- 서울 은평 한옥마을, 세종 1-1생활권 한옥마을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례를 적용받았다.

[참고]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특례적용 규정	특례적용 범위	
	은평 한옥마을 ⁷⁾	세종 한옥마을 ⁸⁾
1. 대지의 조정 (「건축법」 제42조)	[적용배제] 대지의 조정 관련 규정 배제, 대지 면적의 5%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	[적용배제] 대지의 조정 관련 규정 배제, 대지 면적의 5%이상은 한옥과 어울리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
2.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55조)	[적용완화] 건폐율의 10%p 완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0%로 완화(한옥만 적용) ※ 한옥과 비한옥이 혼재될 경우, 각 건축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	-
3.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적용완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m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적용완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m 이상 이격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61조)	[적용완화] 한옥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m 이상으로 함	[적용완화] 정북방향(행복도시 건축도시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규 한옥마을의 개발 또는 한옥마을 조성 이후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의 지원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동법 제2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물의 신축개보수에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하여, 한옥마을의 계획 추진 및 사업 추진,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도록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7) 세종시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고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0호, 2016. 6. 22.)

8) 북촌·경복궁 서측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6호, 2015. 5. 21.)

-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및 「건축법」상의 건축선의 지정(제46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47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및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제59조)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신규 한옥마을의 공공시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의 설치 및 관리, 공공공간(주민커뮤니티센터)의 활용 및 유지, 한옥 유지관리와 관련한 자재·장비·교육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별로 필요한 내용을 포괄하여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운용할 수 있다.
- 특별건축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이 top-down 방식이라면, 건축협정은 토지소유주들 간의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및 마을의 경관 관리가 가능하다.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의 조경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리고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이 가능하다(건축법 제57조).

2. 신규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 현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자체는 동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및 보조금 등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에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보조 및 용자가 가능하며,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하다.
- 동법 제26조는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대수선의 범위)·제58조(대지안의 공지)·제61조 제1항(건축물의 높이 기준)·제84조(건축면적 산정 방법)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떨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2017. 8. 9. 개정)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가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중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랫면까지의 다락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가 1.8m 이하인 곳에 설치하는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2017. 8. 9. 신설)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표 2]의 제2호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타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사·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의 경우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와의 접합(제44조), 건축선(제46조)기준을 적용 완화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한옥체험업 규정, 2009. 10. 7.)에서 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국제관광 진흥사업과 국민관광 진흥사업에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

□ 지자체 지원

- 2017년 9월 현재 전국 60개의 자치단체에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 이 중 「한옥지원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지자체는 50곳이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지자체는 10곳이다.
 -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특정 문화재 지역에 대한 한옥 관련 조례(예: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 지원 조례」)는 제외하였다.
-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은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문화복지시설, 취득세 등 세제 감면, 지자체 운영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한옥 신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의 경우 최대 1억 8천만 원(한옥 보전구역)까지 지원하며, 수원시는 최대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한옥촉진지역)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천만 원~5천만 원까지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다.
- 이밖에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경우 담장, 대문, 조경 시설, 간판 등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사채 한옥 관련 조례 운영 현황(2017. 9. 기준)

행정구역	조례명	제정일	신축	전면 수선	부분 수선	기반 시설	기타 시설	세계 혜택	시설물 사용료 감면	한옥 위원회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02. 05.20.	○	○	○	○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6. 03.24.	○	○						○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2.31.	○	○	○			○	○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6. 07.13.	○	○	○			○		○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 한 조례	2013. 07.25.	○	○	○					○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2013. 11.11.	○	○	○	○	○	○		○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5. 11.16.	○	○	○					○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	2013. 01.01.	○	○			○	○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6. 04.12.	○	○	○	○				○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6. 10.31.	○	○		○				○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16. 01.04.								○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	2009. 06.19.	○	○	○			○	○	○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6. 06.09.	○	○	○	○		○		○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2013. 08.02.	○			○				○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15. 10.01.	○			○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1.06.	○							○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2011. 10.21.	○			○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4. 07.01.	○	○	○			○	○	○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2. 12.28.	○	○	○					○

행정구역	조례명	제정일	신축	전면 수선	부분 수선	기반 시설	기타 시설	세계 혜택	시설물 사용료 감면	한옥 위원회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2015. 05.01.	○	○	○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7. 04.20.								○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04.10.	○	○		○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6. 12.30.		○		○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2004. 03.30.	○	○	○			○		○
원주군	한옥지원 조례	2010. 10.07.	○	○	○					○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6. 12.22.	○	○		○	○			○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2007. 01.12.	○	○		○				○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2011. 10.17.	○	○	○					○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7. 05.31.	○	○	○					○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08. 09.29.	○	○	○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09. 04.20.	○	○	○					○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2009. 05.27.	○							○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4.08.	○			○				○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4.16.	○	○	○	○				○
구례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7. 11.26.	○	○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9. 01.09.	○	○						○
보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3.23.	○			○				○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03.09.	○							○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2008. 01.22.	○	○	○					

행정구역	조례명	제정일	신축	전면 수선	부분 수선	기반 시설	기타 시설	세제 혜택	시설물 사용료 감면	한옥 위원회
강진군	한옥 지원 조례	2016. 10.07.	○							○
해남군	한옥 지원 조례	2008. 07.28.	○	○	○					○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08. 01.31.	○	○	○	○				○
무안군	한옥 지원 조례	2008. 10.27.	○	○						○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1.20.	○							○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4.20.	○							○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6.23.	○							○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2008. 09.25.	○	○	○	○				○
진도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4.14.	○	○	○					○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2009. 08.06.	○	○	○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조례	2015. 12.31.	○							○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2017. 05.02.	○			○				○
안동시	한옥 지원 조례	2012. 06.15.		○	○			○	○	○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2016. 12.30.	○	○	○					○
청송군	한옥 지원 조례	2015. 12.31.	○	○	○					○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 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	2009. 12.24.	○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2009. 12.31.	○	○	○					○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	2011. 05.30.	○	○	○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2011. 07.13.	○	○	○					○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2012. 01.12.	○	○	○					○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	2015. 07.22.	○	○	○					○